

1. 개정이유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안 제8조)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7. ~ 2022.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실용화재단””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진흥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

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 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 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 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 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 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u>농업기술실 용화재단</u> (이하 이 조에서 “ <u>실용 화재단</u> ”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 ----- ----- ----- ----- ----- ----- ----- <u>한국농업기술 진흥원</u> ----- “ <u>진흥 원</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실용화재단</u> 의 장은 농촌진흥 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 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 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③ <u>진흥원</u>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u>실용화재단</u> 의 장은 제3항에	④ <u>진흥원</u> -----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 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생 략)	----- ----- ----- -----. ⑤ (현행과 같음)
--	---